

제 45 호

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말소 · 거주불명등록 공고

아래와 같이 세대주가 대상자의 주민등록을 거주불명등록 처리해 줄 것을
신청하였으므로 **2019년 11월 12일**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세대주 성 명	성 명 생년월일	주 소	지연신고사항
이**	조** 1960-08-25	부산광역시 북구 시랑로 176	주민등록신고의무

※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「주민등록법」 제10조, 제11조에 따른 주민등록의(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)이 처리되며,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(「주민등록법」 제40조제3항).

2019년 10월 29일

구포3동장

